

제25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년 4월 24일 (화)

심 사 보 고 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 4. 24.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 4. 17)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1. 제안이유

- 가.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중복체육 발전과
스포츠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현재의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과
나. 한방과 양방의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
를 신축하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관련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취득하려던 (주)삼익 소유의 공장부지 매입계획을 유치대상 기업에서 직접 매입함에 따라 취득계획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취득 :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 (1)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번지와 1필지
- (2) 사업규모 : 1,468㎡(445평) - 증축(수직 3층→ 5층)
- (3) 사업기간 : 2007. 4~12(9개월간)
- (4) 사 업 비 : 1,500백만원

나. 재산취득 :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

- (1)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
(환자쉼터 녹지공간)
- (2) 사업규모 : 지하1·지상 3층 2,676㎡(809평)
- (3) 사업기간 : 2007. 5~2008. 10(2년간)
- (4) 사 업 비 : 5,031백만원
- 국비 1,311 · 도비 2,489 · 의료원 1,231

다.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계획 취소

- (1)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일원
- (2) 매입규모 : 2필지 108,697㎡(32,880평)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공장용지, 98,905㎡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313번지, 공장용지, 9,792㎡
- (3) 사업기간 : 2007. 3 ~ 4(2개월)
- (4) 사 업 비 : 33,000백만원(도비 16,500 청주시비 16,500)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

1.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청주시 방서동 소재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에 관한 장애인 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의 숙원사항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아울러 1995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됨.

최근 들어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로 회관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더욱이 두 단체는 2억 2천만원(생활체육회 120,000천원·장애인체육회 100,000천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무실을 입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관건립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음.

다만, 본 건 심사를 위해서는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 그리고 건축면적 지상 2층 445명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의 건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월 8일 한방진료부 설치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됨.

다만, 한방진료부 설치를 위한 국도비 지원액 26억 2,200만원(국비 1,311백만원·도비 1,311백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도비 11억 7,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바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청주의료원은 공공성과 독립경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바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는 합목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방진료부 운영이 의료원 경영에 미치는 경영분석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대규모 기업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계획 취소

본건은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등 2필지 32,880평 공장부지 취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반도체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나 유치대상기업인 (주)하이닉스가본 건 공장부지를 직접 매입함에 따라 취득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견없음.

IV.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유	취득자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계	토지	1 건	△54,348.5	△16,900,000			
	건물	2 건	4,144.0	6,531,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번지의 1필지	1,468.0	1,500,000	2007.4-12	충청남도체육 회관 증축	증 축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흥덕구 사적동 554-6번지	2,676.0	5,031,000	2007. 5 ~ 2008.12	한방방진료부 및 건물방진터신축	신 축
	기타						
3	토지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의 1필지	△54,348.5	△16,900,000	2007.3-4	만도해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유지	(주)삼익 계회 취소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련법령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신·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p> <p>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신·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별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